

1. 개정이유

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,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해당사항 없음
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)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선도형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및 선도형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:
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3의 지원사항
2. 도약형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및 도약형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:
법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지원사항

②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)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.</u> <u>1. 선도형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및 선도형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: 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3의 지원사항</u> <u>2. 도약형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및 도약형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: 법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지원사항</u> <u>②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</u>